

2013학년도 학자금
대출한도 설정 및 분석을
위한 정책연구

2013. 2.



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및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

책임연구원: 하 연 섭 (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)

공동연구원: 이 주 헌 (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)

연구보조원: 임 유 미 (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)

연구협력관: 한 성 윤 (한국장학재단 팀장)

2013. 2.

한 국 장 학 재 단

제 출 문

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

본 보고서를 「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및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」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.

2013. 2.

- 주관연구기관명 : 연세대학교
- 연구 기간 : 2012.8.10 ~ 2013.2.28.
- 주관연구책임자 : 하 연 섭

요 약

1. '14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지표

- 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학자금대출제한 지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표와 일관성 유지
- 다만,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지표와는 달리 연체율을 활용
- 연체율 지표를 포함함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 지표 중 일부 지표의 비율을 조정

<표 1> '14년 학자금대출제한 지표

구 분	4년제 대학		전문대학	
	대출제한	재정지원제한	대출제한	재정지원제한
취업률	15%	15%	20%	20%
재학생총원율	25%	25%	25%	25%
전임교원확보율	10%	10%	7.5%	7.5%
교육비환원율	10%	12.5%	7.5%	10%
학사관리	10%	12.5%	10%	12.5%
장학금지급률	10%	10%	7.5%	7.5%
연체율(기존 상환율)	5%	-	5%	-
등록금 부담완화	10%	10%	7.5%	7.5%
법인지표	5%	5%	5%	5%
산학협력수익률	-	-	5%	5%

2. '14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의 선정 방법

- 1) 재정지원제한대학(하위 15% 대학)을 먼저 선정
- 2) 이와 독립적으로 대출제한대학 지표를 활용하여 대출제한대학 후보대학을 선정
- 3)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절대지표 2개 이상 미 충족대학 혹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면서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상대평가에서 하위 3%에 포함된 대학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
 - 단,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 하위 15%와 학자금대출제한대학 하위 15%에 동시에 포함된 대학에 한하여 선정
- 4)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 시 모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의 모수를 그대로 따르기로 함

3. '14년 절대평가 지표

가. 취업률

1) 취업률 산정방식 변경

- 교내취업 상한 설정(3%)
- 유지취업률 도입 및 취업률 비중 조정

- $0.6 \times (\text{'13.6.1 건보취업률} + \text{국세DB취업률}) + 0.2 \times (\text{'12.12.31 건보취업률} + \text{예체
능계 인정취업률}) + 0.2 \times (\text{'12.6.1 취업자의 유지취업률})$

- 입학 당시 기취업자를 취업대상자에서 제외
- 이러한 변경에 따라 '2013년 학자금대출제한 취업률의 최소기준으로 설정했던 4년제 대학 51%, 전문대 55% 보다는 하향 조정할 필요성 제기
- 애초의 최소기준 보다는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'13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 당시 최종적으로 활용했던 최소기준 4년제 대학 50%, 전문대 50%를 그대로 활용

나. 재학생 충원을

- 재학생 충원을 산식은 큰 변동이 없으므로 전년도 최소기준을 그대로 유지
- 4년제 대학 90%, 전문대 80%

다. 전임교원확보를

- 전임교원확보율 산식은 변동이 없으므로 전년도 최소기준을 그대로 유지
- 4년제 61%, 전문대 51%

라. 교육비 환원을

- 교육비 환원을 산식은 변동이 없으므로 전년도 최소기준을 유지
- 4년제 대학 100%, 전문대 95%

마. '14년 절대평가 지표 기준 및 산정근거

- '14년 절대평가 지표 기준 및 산정근거는 다음의 <표 2>와 같음

<표 2> '14년 절대평가 지표 기준 및 산정근거

구 분	기준		변경 내용
	4년제	전문대학	
취업률	50%	50%	■ 교내취업 상한 설정, 유지취업을 도입 및 취업률 비중 조정, 기취업자 제외 방식 변경
재학생충원율	90%	80%	■ 기존 지표 기준 유지
전임교원확보율	61%	51%	■ 평균의 94% 수준,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설정
교육비 환원율	100%	95%	■ 기존 지표 기준 유지

4. 하위대학 상대평가 도입

- '11년 절대지표를 도입하면서 대학 교육의 질의 변화에 따라 향후 절대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혹은 하위 15%를 확대할 계획이었음
 - 그러나 대학에 대한 안정성 및 계속성 보장을 위해 절대기준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있음
 - 또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하위 15% 선정 관행이 굳어짐에 따라 하위 15%를 확대하기도 어려움

- 절대기준과 하위 15%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는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을 벗어나기 위해 전체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있으나 4개 절대지표만 노력을 집중하거나 이를 조작하는 전략적 행위가 나타나고 있음

- 이러한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

-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 개선안
 - 절대지표 4개 중 2개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하위 15%에 해당하는 대학
 - 절대지표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하위 3%에 해당하는 대학

5. 경영주체 전환대학 판정 방안

○ 경영체제 전환대학은 전환 후 2년간* 평가유예

- * 경영체제전환대학 : 최근 2년 이내 경영주체의 전환이 있고, 대규모투자가 포함된 경영개선 계획을 추진 중인 대학('12학년도 대출제한대학 선정방안)

○ 경영체제 전환대학 판정 방안

-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위원 중 5인으로 경영주체 전환대학 평가단 구성
 - ※ 평가단 : 단장 1인, 위원 4인
- 평가단에서 대학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
- 서면심사에서 경영주체 전환대학 인정 후보대학을 선정한 후, 2차 현장실사를 실시
- 2차 현장실사에서는 이사장, 총장 면담 및 학교 현황에 대한 현장 평가 실시
-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주체 전환대학 평가단에서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에 보고
-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에서 경영주체 전환대학 인정 여부 최종 결정